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상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97 발의연월일: 2024. 6. 14.

발 의 자: 박상혁·강선우·이연희

박홍근 • 이해식 • 홍기원

한준호 · 김주영 · 정진욱

박균택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미국, 유럽 등 항공선진국을 위주로 전 세계가 미래 항공신산업인 드론의 기술선도국 지위확보를 위해 개발·실증·상용화 등 안전관련 법령의 개정 등 맞춤형 산업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나, 우리나라는 드론을 유인비행체 안전관리 중심의 「항공안전법」체계 하에 초경량비행장치의 일부로 분류하고, 드론 산업발전을 위한 법 개정 소요시마다 「항공안전법」내 예외규정 형태로 대응하고 있음.

이에, 드론산업의 조기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」을 제정하였으나, 동법은 드론 발전기반 조성, 드론시스템의 운영·관리 등 드론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, 기체등록, 조종자격, 비행승인, 사업체관리 등 안전관리까지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.

이러한 이유로 드론의 개발・실증・상용화 등에 필요한 안전 및 사

업 등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, 산업발전에 따른 규제혁신에 적시에 대응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기반마련과 드론산업의 질서유지, 건전한 발전 도모를 위해 「드론의 관리 및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을 제정하는바, 현행 「항공안전법」에서 정한안전관련 조항 중 신규제정법의 조항과 중복되는 조항을 이관하고, 기존 「항공안전법」내의 중복조항을 삭제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함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48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2조제1항 본문 중 "성명, 제129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 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"를 "성명"으로 한다.

제127조제4항을 삭제한다.

제128조 단서 중 "무인비행장치"를 "동력패러글라이더"로 한다.

제1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31조의2를 삭제한다.

법률 제20051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35조제8항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.

제166조제3항제7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혂 개 정 아 행 제122조(초경량비행장치 신고) ① 제122조(초경량비행장치 신고)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(이하 "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 등"이라 한다)는 초경량비행장 치의 종류, 용도, 소유자의 성 명, 제129조제4항에 따른 개인 명 ----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 경량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. ② ~ ⑤ (생 략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제127조(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 제127조(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 인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인) ① ~ ③ (생 략) ④ 제2항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<삭 제>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이 필요한 때에 제131조의2제2항 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 려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사실을 국

<u>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면 비행</u>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제128조(초경량비행장치 구조 지원 장비 장치를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 지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안전한 비행과 초경량비행장기사고 시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휴대하여야한다. 다만,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29조(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) ① ~ ③ (생략)

④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「개인정 보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(이하 "개인정보"라 한 다) 또는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 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(이하 "개인위치정보"라 한다) 등 개 인의 공적・사적 생활과 관련된

제128조(초경량비행장치 구조 지
원 장비 장착 의무)
<u>동력패</u>
<u> 러글라이더</u>
제129조(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
등의 준수사항) ① ~ ③ (현행
과 같음)
<u><</u> 삭 제>

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 는 경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 며 형식,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 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법률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경량 | <삭 제> 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조종 자로서 야간에 비행 등을 위하 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을 받은 자는 그 승인 범위 내 에서 비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적 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 다.

⑥ 제5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 고자 하는 자는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행승인 신청 을 함께 할 수 있다.

제131조의2(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) ① 군용·경찰용 또는 세 관용 무인비행장치와 이에 관련 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

<삭 제>

<삭 제>

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.

②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 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재 해 · 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 · 구 조, 화재의 진화, 응급환자 후 송.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 행(훈련을 포함한다)하는 경우 (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 한정한다)에는 제129조 제1항, 제2항,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③ 제129조제3항을 이 조 제2항 에 적용할 때에는 "국토교통부 장관"은 "소관 행정기관의 장" 으로 본다. 이 경우 소관 행정기 관의 장은 제129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실을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알려야 한다.

개정법률

법률 제20051호 항공안전법 일부 법률 제20051호 항공안전법 일부 개정법률

- 제135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제 ~ ⑦ (생 략) ~
 -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항공안전기술원법」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 - 1. ~ 2의2. (생략)
 - 3. 제129조제5항 후단에 따른 검사에 관한 업무

<u>4</u>. ~ <u>6</u>. (생 략)

제166조(과태료) ①・② (생략) 7
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~ 6. (생략)
- 7. 제129조제5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범위외에서 비행한 사람
- ④ ~ ⑥ (생 략)

제135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(1)
~ ⑦ (현행과 같음)
8
·.
1. ~ 2의2. (현행과 같음)
<u><삭 제></u>
<u>3</u> . ~ <u>5.</u> (현행과 같음)
제166조(과태료) ①・② (현행과
같음)
③
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<삭 제></u>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